

통신자료 무단수집 규탄 전북지역 기자회견문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기자회견문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사이를 스치듯이 날아다니며
쉬파리처럼 잠시 맴돌다가 방향을 바꾸어 날아가 버렸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보는 순찰기였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알이 포착한다.
이 시계 안에 들어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1948년 집필된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한 구절이지만, 2016년 한국의 현실과도 의미심장하게 맞닿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만5415건, 문서 수 기준으로 56만4847건이었다. 2015년 전체에는 1057만 건에 달해, 전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제공된 것이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국민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무차별 수집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월부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을 본격 시작하였다.

시민들이 각 이동통신사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열람한 결과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신자료가 여러 수사기관에 제공됐음을 확인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종교인, 정당인, 기자,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사기관에서 무차별 통신자료를 수집했음이 드러났다.

국가기관은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제공요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각 개인이 이동통신사에 개인정보조회신청을 통해서야 자신의 정보가 무단수집 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집한 기관도 가지 각색이다. 경찰청과 검찰청, 국정원까지 등장한다. 요청지역도 전국에 퍼져 있고, 전북 지역 검찰·경찰이 타지역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를 무단수집당한 시민들은 정보·수사기관에서 무슨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단수집한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시기를 보면 그 의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민중총궐기 직후인 2015년 12월에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폭증했는데, 이는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시·사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통신자료를 무단수집 당한 시민 중 대다수는 아예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는데, 이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정보부터 털어본 셈이다.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다.

이에 통신자료를 무단수집 당한 500여명의 청구인이 2016년 5월 18일,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어 2016년 5월 25일에는 수집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온 정보·수사기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및 행정소송을 냈고, 이동통신사에는 자료제공요청사유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전북에서도 11명의 노동자·시민들이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했고, 손해배상청구에도 함께 하고 있다.

국가가 마음대로 시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회는, 빅브라더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시민은 권력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복종한다는, 소설 「1984」가 묘사했던 암울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불의한 집단이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했던 시대를 경험해봤었기에 통제 받지 않는 국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국정원의 시민 감시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 폐기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에서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와 무단수집한 정보·수사기관을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에게 있으며,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및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 역시 정보의 주체에게 있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를 위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민주노총전북본부

◦ 첨부자료 1 - 전북 지역 시민 통신자료 조취결과 및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

통신자료 조취결과

이름	제공요청기관	제공요청사유	요청날짜	이통사	직업
채OO	경북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4-10	SK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박OO	전주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6-02-03	KT	시민
오OO	전주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4-03	LG U+	정당인
박OO	제주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6-02-19	LG U+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문OO	서울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3-26	KT	언론인
	서울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4-08		
문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KT	종교인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3-27		
	전주지방검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3-27		
	정읍지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3-27		
윤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17	LG+	노동조합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04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임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KT	노동조합원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1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30		
조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8	KT	노동조합원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1		
	서울남대문경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01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30		
	국가정보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7-09		
이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30	KT	노동조합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04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1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우OO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2-22	LG+	노동조합원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11-26		

◦ 첨부자료 1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자료)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500명(통신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공당한 시민 및 민변회원)

<피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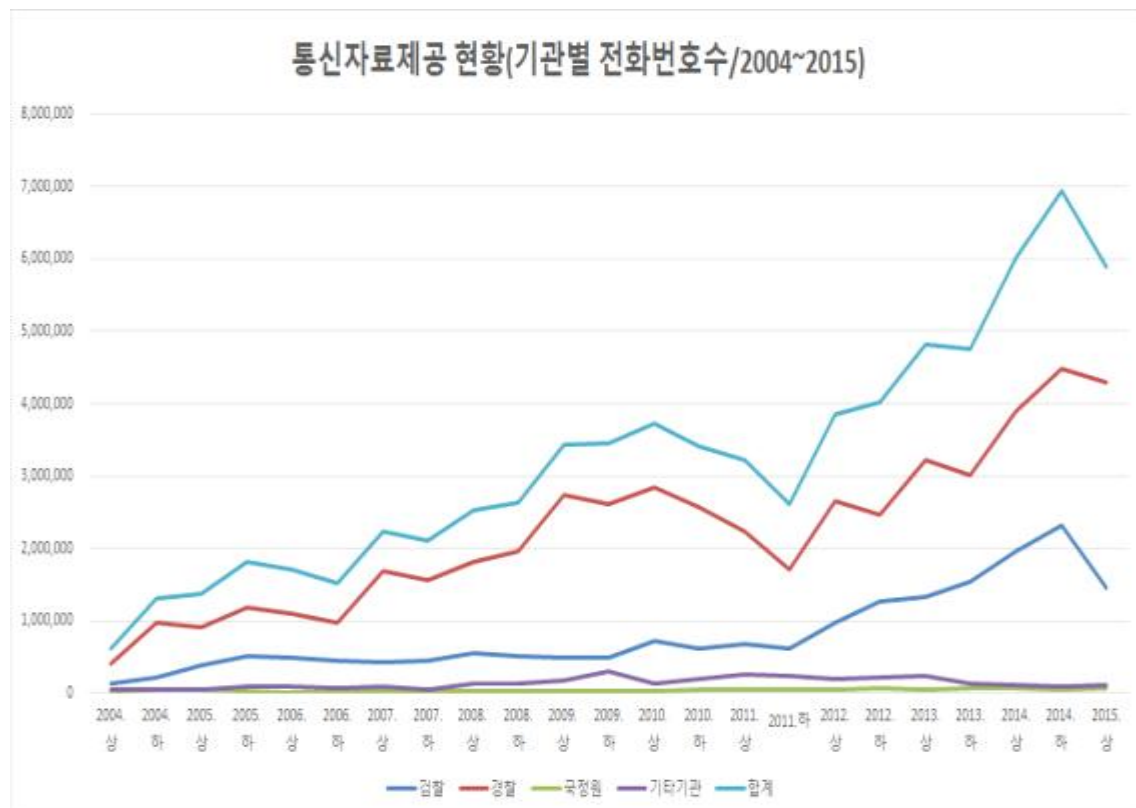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제 8922부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1.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 : 위 피청구인들이 변호사 및 교수인 청구인들(10명)에 대하여 한 통신자료취득행위의 위헌 확인
2. 법률의 위헌확인 : 청구인들 500명에 대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긴급자료요청)의 위헌 확인

<청구원인의 요지>

■ 통신자료 현황(미래창조과학부 공식 통계자료)



1. 이 사건 각 통신자료취득행위의 위헌성

- 10명의 청구인들(변호사들과 교수)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상의 영장주의에 따라 영장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그 통신자료취득은 위헌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등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권임(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

-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자료취득은 ‘사찰 목적’ 또는 ‘사생활 침해 목적’,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 위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청구인 좌세준에 대하여는 총 3회, 청구인 조영선에 대하여는 2회, 청구인 하주희에 대하여는 총 5회, 청구인 안희철에 대하여는 총 2회, 청구인 이광철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사들과 교수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시로 편의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취득행위를 자행했음을 알 수 있음[이러한 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통신자료취득 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됨(별지 제1-2목록 ‘통신자료제공 현황란’ 참조)]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 단서의 위헌성

- 우리나라 국민수가 51,584,349명(2016. 4.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1대 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아래 표 참조), 위 조항은 거의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사유로 국가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한 문언으로 국민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임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등 가입 현황〉

구분	2014. 12월	2015. 12월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휴대폰	52,844,612	53,660,658	53,730,755	53,847,236	53,999,737
사물인터넷	3,465,679	4,275,972	4,359,549	4,429,819	4,523,195
합계	56,310,291	57,936,630	58,090,304	58,277,055	58,522,932

- 위 조항은 국가기관이 통신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최근에 나온 캐나다연방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임)

- 위 조항은 통신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후통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통신자료제공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이고도 사생활 침해적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짐, 따라서 이러한 무차별적이고도 사생활 침해적인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도 부합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 (끝)

통신자료 제공내역 결과통지서

□ 고객사항

가입자명	조	대상전화번호	010-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연락처	063-
성별		주소(설치장소)	
신 청 일	2016 년 03 월 11 일		

□ 결과 통지

통신자료 제공현황				
상품	제공 일자	요청기관	요청사유	제공 내역
모바일	2015-12-28	서울지방경 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9524]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12-22	서울지방경 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9426]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12-22	서울지방경 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9447]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12-21	서울지방경 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938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12-01	서울남대문 경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1626]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11-30	서울지방경 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8857]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모바일	2015-07-09	국가정보원	대자-1854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일

통신자료 제공근거

통신자료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